

2001. 6. 27
제10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고 광 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200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1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 고
계	97,312,784	86,788,154	10,524,630	12.13	
일반회계	87,935,816	78,800,807	9,135,009	11.59	
특별회계	9,376,968	7,987,347	1,389,621	17.39	

2.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가. 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제1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 고
1,237,234	1,134,457	102,777	9.05	

나. 증감된 세항·세세항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1,237,234	1,134,457	102,777	
의 사 운 영	906,254	821,377	84,877	
인건비	459,232	404,777	54,455	
경상적경비	339,448	315,026	24,422	
자체사업	107,574	101,574	6,000	
의 정 활 동	330,980	313,080	17,900	
경 상 적 경비	330,980	313,080	17,000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①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

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즉, 이미 확정하여 성립된 당초예산의 집행과정 중인 회계년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이들 부족경비를 본예산에 보정·추가하는 추가예산과,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총 지출액 한도 내에서 예산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경정예산을 말하는데, 추가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하는 것이며,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산총칙·계속비 등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금액의 감소, 부서·소관·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의 변경, 예산목적의 변경, 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명시이월비의 범위변경 등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는 추경사유의 타당성 여부, 추경요건에의 부합여부, 추정시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3,445만 7천원 대비 9.05%인 1억 277만원이 증액된 12억 3,72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인상분과 , 의원 해외연수수행공무원 여비, 업무수행과 관련한 냉·난방기 구입, 카메라 구입 등이며,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해외 연수비 등으로 모두 추경요건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 해외 연수비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민정서를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